##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2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

발 의 자:임이자·안상훈·김위상

유용원 • 조지연 • 신성범

김성원 • 김형동 • 우재준

김기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·관리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·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,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·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·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 사고 예방, 구조,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·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##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호(종전의 제14호) 중 "제13호"를 제14호"로 한다.

5.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, 구조,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·운영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업) 공단은 각 호의 사업을	제9조(사업)
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
	예방, 구조, 구급 등의 업무를
	<u>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·운</u>
	<u>영</u>
<u>5.</u> ~ <u>13.</u> (생 략)	<u>6.</u> ~ <u>14.</u> (현행 제5호부터 제13
	호까지와 같음)
<u>14.</u> 제1호부터 <u>제13호</u> 까지의	<u> 15.</u> <u>제14호</u>
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	
로 정하는 사항	